노동관계법 준수 자가진단표

(일반기업용)

사업주분들이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있는지 스스로 진단해 볼 수 있는 「자가진단표」입니다. 귀사가 노동관계법령 등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이 「자가진단표」를 활용하여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자가진단시 궁금하신 내용은 「노무관리 가이드북」*을 활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* 파일 내려받기: 고용노동부(www.moel.go.kr) → 배너(노동관계법 준수 자가진단표 및 노무관리 가이드북)

2023년





1. 근로조건 서면 명시

법 조항	진단 사항 및 방법	진단 결과
근로기준법 제17조 (근로조건 명시)	○ 근로계약서를 서면(전자문서 포함)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주었는지? * 서면 작성 + 근로자에 교부	□ 준수 □ 미준수
	 ○ 근로계약서에 법령 상 규정된 근로조건을 명시했는지? *①임금(항목, 계산·지급방법), ②소정근로시간, ③유급휴일, ④연차유급휴가 등 [표준 근로계약서 참고] →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→ 정책 → 우측하단 (표준근로계약서) 	□ 준수 □ 미준수
기간제법	○ 기간제·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서면(전자문서 포함)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주었는지? * 서면 작성 + 근로자에 교부	□ 준수 □ 미준수
제17조 (근로조건 서면명시)	○ 기간제·단시간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법령상 규정된 근로조건을 명시하였는지? *①근로계약기간, ②근로시간·휴게, ③임금의 구성항목·계산방법 및 지불방법, ④휴일·휴가, ⑤취업장소·종사업무, ⑥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(⑥은 단시간근로자 한함)	□ 준수 □ 미준수
근로기준법 제27조 (해고사유 등 서면통지) 5인 미만 미적용 (해고예고는 적용)	○ 근로자를 해고했을 때 30일 전에 예고를 했고(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지급),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했는지? *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'서면'으로 해야 효력이 있고, 정당한 사유가 없거나 '구두'로 하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.	□ 준수 □ 미준수

2. 근로자 명부 및 계약서류 보존

법 조항	진단 사항 및 방법	진단 결과
근로기준법 제42조 (계약서류 보존)	 ○ 근로계약에 관한 다음의 서류를 3년간 보존하고 있는지? * 근로자명부, 근로계약서, 임금대장, 임금의 결정·지급방법·계산의 기초, 고용·해고·퇴직, 승급·감급, 휴가, 근로시간 관련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, 연소자 증명 관련 서류 	□ 준수 □ 미준수
	○ 사업장별로 임금지급할 때마다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있는지?	□ 준수□ 미준수
근로기준법 제48조 (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)	○ 임금대장에는 법정 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지? * 성명, 생년월일 등 근로자 특정정보, 고용 연월일, 업무, 임금·가족수당 계산기초, 근로일·시간(연장·야간·휴일근로 포함), 기본급, 수당, 기타 내역, 공제금액	□ 준수 □ 미준수
	 ○ 임금지급할 때마다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였는지? * 근로자 특정정보, 임금지급일, 임금총액, 임금구성항목, 임금계산방법√, 임금공제내역 ✓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·시간 등에 따라 달라질 경우 작성(연장·야간·휴일근로의 경우에는 시간 수 포함) 	□ 준수 □ 미준수

3. 최저임금 준수

법 조항	진단 사항 및 방법	진단 결과
최저임금법 제6조 (최저임금의 효력)	○ 근로자에게 금년도의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지?* '23년 시급 9,620원, 1주 소정근로 40시간 및 유급주휴 8시간인 경우 월급 2,010,580원	□ 준수 □ 미준수
최저임금법 제11조 (주지 의무)	○ 최저임금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알려주고 있는지	□ 준수 □ 미준수

4. 임금 등 각종 금품 지급

관련 법 조항	진단 사항 및 방법	진단 결과
근로기준법 제36조 (금품 청산)	○ 근로자가 사망·퇴직시 임금,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였는지? * 해고, 합의해지, 정년 등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모든 경우 해당 * 당사자간 합의로 지급기일 연장가능 (연 20% 지연이자 포함)	□ 준수 □ 미준수
근로기준법 제43조	 ●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하였는지? * 다만, 법령·단체협약에 규정이 있는 경우 일부 공제나, 통화 이외 다른 것으로 지급 가능 * 친권자, 법정대리인, 임금채권 양도인 등에게 대신 지급 불가 	□ 준수 □ 미준수
(임금 지급)	 ▶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였는지? * 다만, 1개월을 넘는 기간에 대한 수당,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등은 예외임 	□ 준수 □ 미준수
근로기준법 제44조(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지급)	○ 도급계약에서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(또는 도급인)의 귀책사유로 임금을 체불했을 때 직상수급인이 연대 책임을 졌는지? *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: 정당한 사유없는 도급 금액 미지급, 원자재 공급 지연, 도급 조건의 미이행 등	□ 준수 □ 미준수
근로기준법 제46조 (휴업수당) 5인 미만 미적용	 ▶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 평균임금의 70%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였는지? * 사용자 귀책사유: 고의, 과실, 사용자 세력범위 내 경영상 장애 등 * 휴업: 근로제공이 불가능하거나 사용자가 노무수령을 거부한 경우 * 사업주가 휴업수당을 지급하실 경우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(관할 고용센터에 요건 확인 필요) 	□ 준수 □ 미준수
근로기준법 제56조 (연장·야간 및 휴일근로) 5인 미만 미적용	○ 연장·야간·휴일근로시 통상임금의 50%를 가산 지급했는지? * 연장: 법정근로시간 초과(단시간근로자는 소정 근로시간 초과) * 야간: 22시~06시 * 휴일: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50%, 8시간 초과시 100% 가산(연장근로가 되어도 휴일가산 수당만 지급)	□ 준수 □ 미준수







5.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한도 준수

관련 법 조항	진단 사항 및 방법	진단 결과
근로기준법 제50조 (근로시간) 5인 미만 미적용	 ●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하고 있는지? * 성인: 일 8시간, 주 40시간 이내 * 연소자(18세 미만): 일 7시간, 주 35시간 이내 ※ 13세 이상 근로 가능(13세 미만은 예술공연만 가능) ※ 13~15세 미만 근로시 취직인허증 필요 	□ 준수 □ 미준수
	○ 연장근로에 대해 근로자와 합의했는지? * 당사자 간 합의가 있어야 연장근로 가능 * 단, 임신 중 여성(임부)은 합의해도 연장근로 불가	□ 준수 □ 미준수
근로기준법 제53조 (연장근로의 제한)	○ 실제 연장 근로한 시간이 법정 한도 이내인지? * 성인: 주 12시간 * 연소자: 일 1, 주 5시간 이내 * 산후 1년 미만 여성(산부): 일 2시간, 주 6시간, 연 150시간	□ 준수 □ 미준수
5인 미만 미적용	○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,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았는지?	□ 준수 □ 미준수
	 ●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업장의 경우, 인가사항 등을 준수하였는지? * 인가받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인가받은 시간 이내 특별연장근로 실시 가능 * 건강검진 사전 서면통보, 휴일·휴식 부여 등 근로자 건강보호조치 필요 	□ 준수 □ 미준수

6. 휴게시간 부여

관련 법 조항	진단 사항 및 방법	진단 결과
근로기준법	○ 휴게시간을 준수하고 있는지?* 4시간 근로시 30분 이상, 8시간 근로시 1시간 이상(시업시각과 종업시각 도중 부여)	□ 준수 □ 미준수
제54조(휴게)	⊙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지?	□ 준수□ 미준수

7. 유급휴일 부여

관련 법 조항	진단 사항 및 방법	진단 결과
근로기준법 제55조(휴일)①	○ 근로자가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1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 (주휴일)을 부여하고 있는지?	□ 준수 □ 미준수
근로기준법 제55조(휴일)② 5인 미만 미적용	안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하고 있는지?	□ 준수 □ 미준수

8. 연차유급휴가 부여

관련 법 조항	진단 사항 및 방법	진단 결과
근로기준법 제60조 (연차유급휴가)	 ○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있는지? * 1년간 80%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, 1년간 80% 미만 출근 또는 계속 근로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 1일을 부여해야 함 	□ 준수 □ 미준수
5인 미만 미적용	⊙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시 수당을 지급하는지?	□ 준수□ 미준수

9. 모성 보호

관련 법 조항	진단 사항 및 방법	진단 결과
근로기준법 제70조 (야간근로와 휴일 근로의 제한)① 5인 미만 미적용	○ 18세 이상 여성의 야간 및 휴일근로 시 근로자 동의를 받았는지?	□ 준수 □ 미준수
지 70조 (야간근로와 휴일 근로의 제한)②	○ 임·산부, 연소자의 야간 및 휴일근로 시 근로자 동의 및 고용노동부 장관(관할 지방관서)의 인가를 받았는지? * 특히 임부는 근로자의 명시적 청구 필요	□ 준수 □ 미준수
근로기준법 제71조 (시간외 근로)	○출산후 1년 이내 여성(산부)의 연장근로 시간이 1일 2시간, 1주 6시간, 1년 150시간 이내인지?	□ 준수 □ 미준수
	○ 임신중인 여성에게 출산전·후 90일(다태아는 120일) 이상 휴가를 부여했는지? * 출산 후 45일(다태아는 60일) 이상 휴가 배정	□ 준수 □ 미준수
	○ 근로자 청구 시 유산·사산휴가를 부여했는지?	□ 준수 □ 미준수
근로기준법 제74조 (임산부의 보호)	○ 출산 전·후, 유·사산 휴가 시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했는지? (다태아 75일) * 정부는 출산전후휴가 최초 60일 동안 최대 월 210만원의 휴가급여를 지원 합니다(고용센터에 요건 확인 필요)	□ 준수 □ 미준수
	○ 임신 중 여성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시켰는지?* 임신 중 여성은 연장 근로 절대 금지	□ 준수 □ 미준수
	○ 임신 중 여성 근로자가 요구한 경우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였는지?	□ 준수□ 미준수
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	○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할 경우 1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였는지? * 정부는 배우자 출산 유급휴가 최초 5일분을 지원합니다(고용센터에 요건 확인 필요)	□ 준수 □ 미준수
(배우자 출산휴가)	○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했는지?	□ 없었음 □ 있었음
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(육아휴직)	○ 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8세 이하 또는 초등 2년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 신청시 허용했는지? * 정부는 육아휴직에 대한 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(고용센터에 요건 확인 필요)	□ 준수 □ 미준수
	○ 육아휴직 기간(최대 1년)을 근속기간에 포함하였는지?	□ 준수□ 미준수
	○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했는지?	□ 없었음 □ 있었음
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	○ 근로자가 8세 이하 또는 초등 2년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시 허용했는지?	□ 준수 □ 미준수
(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)	○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했는지?	□ 없었음 □ 있었음







10. 취업규칙 작성·신고

관련 법 조항	진단 사항 및 방법	진단 결과
근로기준법 제93조	○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를 했는지? *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인 사업장 대상	□ 준수 □ 미준수
(취업규칙의 작성·신고) 10인 미만 미적용	 ♪ 취업규칙에 법적 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지? * 시업·종업 시각, 휴게·휴일·휴가·교대근로, 임금 결정·계산·지급방법·시기, 퇴직, 퇴직급여, 모성보호, 안전보건, 직장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 관련 사항 	□ 준수 □ 미준수
근로기준법 제94조	♪ 취업규칙 작성·변경시 근로자 의견을 청취했는지?* ① 과반수 노조, ② 없으면 근로자의 과반수	□ 준수□ 미준수
(취업규칙의 작성, 변경 절차) 10인 미만 미적용	 ♪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았는지? * ① 과반수 노조, ② 없으면 근로자의 과반수 	□ 준수 □ 미준수
근로기준법 제96조 (단체협약의 준수) 10인 미만 미적용	취업규칙이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위반한 부분이 있는지?	□없음 □있음

11. 퇴직급여 지급

관련 법 조항	진단 사항 및 방법	진단 결과
퇴직급여보장법 제9조(퇴직금)	 ○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였는지? * 이때,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함 ✓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은행 등에서 개인형퇴직연금제도 통장 개설토록 안내 필요 	□ 준수 □ 미준수
퇴직급여보장법	○ [확정급여형]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했는지?	□ 준수□ 미준수
제17조 (확정급여형 급여 지급)	○ [확정급여형] 급여수준이 계속 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되는지? * 퇴직연금 사업자가 지급한 금액이 이에 미달할 경우 사용자가 부족 금액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함	□ 준수 □ 미준수
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	○ [확정기여형]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/12 이상의 부담금을 사용자가 가입자 계정에 납입하는지?	□ 준수□ 미준수
(확정기여형 부담금 납입 등)	○ [확정기여형] 퇴직 등 부담금 납입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내에 부담금을 모두 가입자 계정에 납입했는지?	□ 준수 □ 미준수
퇴직급여보장법 제23조의7	○ [중소퇴직기금제도]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/12 이상의 부담금을 사용자가 가입자 계정에 납입하는지?	□ 준수□ 미준수
(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등)	○[중소퇴직기금제도] 퇴직 등 부담금 납입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내에 부담금을 모두 가입자 계정에 납입했는지?	□ 준수 □ 미준수

12. 직장 내 괴롭힘 예방

관련 법 조항	진단 사항 및 방법	진단 결과
근로기준법 제76조의2 (직장 내 괴롭힘 금지) 5인 미만 미적용	○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와 이를 금지하는 규정,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시 조치 등에 관한 절차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?	□ 준수 □ 미준수
	○ 취업규칙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예방 활동을 했는지?	□ 준수 □ 미준수
	○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는지?* 신고를 접수하거나, 사건을 인지한 경우	□ 없었음 □ 있었음
	○ 직장 내 괴롭힘이 접수되었을 때 취업규칙 등에 따라 지체없이 객관적 조사 및 적절한 조치를* 하였는지? * 피해자 보호를 위한 근무장소 변경, 유급휴가 명령 등	□ 준수 □ 미준수
	 ○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될 경우 적절한 조치를 했는지? * 피해자에게(요청시) 근무장소 변경, 배치전환, 유급휴가 등 * 행위자에게 징계, 근무장소 변경 등(피해자 의견청취) 	□ 준수
	○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했는지?	□ 없었음 □ 있었음
	○ 직장 내 괴롭힘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피해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누설했는지?	□ 없었음 □ 있었음

13. 직장 내 성희롱 예방

관련 법 조항	진단 사항 및 방법	진단 결과
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(직장 내 성희롱 금지)	○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있는지?	□ 없었음 □ 있었음
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(성희롱 예방교육)	○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? * 매년 전직원 및 사업주를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함 * 10인 미만 사업장은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 게시·배포하는 방법으로 교육 가능	☐ 준수 ☐ 미준수
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(성희롱 발생 시 조치)	○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의무를 이행했는지? *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, 가해자 조치, 피해자 불이익처분 금지, 비밀누설 금지 등	□ 준수 □ 미준수







14. 비정규직 차별 금지

관련 법 조항	진단 사항 및 방법	진단 결과
파견법 제21조 (차별적 처우 금지, 시정 등) 5인 미만 미적용	○ 파견 근로자에게 사용 사업주의 사업 내의 동종 또는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해 '임금, 상여금, 성과금, 복리 후생 등에 있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적 처우를 하는지?	□ 준수 (차별적 처우 없음) □ 미준수 (차별적 처우 있음)
기간제법 제8조 (차별적 처우금지) 5인 미만 미적용	○ 기간제 근로자에게 동종 또는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무기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임금, 상여금, 성과금, 복리후생 등에 있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적 처우가 있는지?	□ 준수 (차별적 처우 없음) □ 미준수 (차별적 처우 있음)
	○ 단시간 근로자에게 동종 또는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에 비하여 임금, 상여금, 성과금, 복리후생 등에 있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적 처우가 있는지?	□ 준수 (차별적 처우 없음) □ 미준수 (차별적 처우 있음)

15. 노사협의회 설치·운영

관련 법 조항	진단 사항 및 방법	진단 결과
근로자참여법 제4조 (노사협의회) 30인 미만 미적용	앙시근로자가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였는지?	□ 준수□ 미준수
근로자참여법 제9조 (위원의 신분) 30인 미만 미적용	○ 노사협의회 사용자·근로자위원은 비상임·무보수로 하고 있는지?	□ 준수 □ 미준수
근로자참여법 제12조(회의) 30인 미만 미적용	⊙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였는지?	□ 준수 □ 미준수
근로자참여법 제18조 (협의회규정) 30인 미만 미적용	○ 노사협의회를 설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협의회규정을 관할 지방고용 노동관서에 제출하였는지?	□ 준수 □ 미준수
근로자참여법 제26조 (고충처리위원) 30인 미만 미적용	○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고충처리위원을 두고 있는지?	□ 준수 □ 미준수

(부록) 고용노동부 지방관서 연락처

명칭	대표번호	관할구역
서울지방고용노동청	02-2231-0009	서울 중구 · 종로구 · 서초구 및 동대문구
서울강남지청	02-3468-4794	서울 강남구
서울동부지청	02-403-0009	서울 성동구 · 광진구 · 송파구 및 강동구
서울서부지청	02-713-0009	서울 용산구·마포구·서대문구 및 은평구
서울남부지청	02-2639-2100	서울 영등포구 · 강서구 및 양천구
서울북부지청	02-950-9880	서울 성북구 · 도봉구 · 강북구 · 중랑구 및 노원구
서울관악지청	02-3281-0009	서울 관악구 · 구로구 · 금천구 및 동작구
중부지방고용노동청	032-460-4545	인천 중구 · 동구 · 남구 · 연수구 · 남동구 및 옹진군
인천북부지청	032-540-7910	인천 부평구 · 계양구 · 서구 및 강화군
부천지청	032-714-8700	경기 부천시 및 김포시
의정부지청	031-877-0009	경기 의정부시 · 동두천시 · 구리시 · 남양주시 · 양주시 · 포천시 · 연천군 및 강원도 철원군
고양지청	031-931-2800	경기 고양시 및 파주시
경기지청	031-259-0204	경기 수원시 · 용인시 및 화성시
성남지청	031-788-1505	경기 성남시·하남시·이천시·광주시·여주시 및 양평군
안양지청	031-463-7300	경기 광명시 · 안양시 · 과천시 · 의왕시 및 군포시
안산지청	031-412-1992	경기 안산시 및 시흥시
평택지청	031-646-1114	경기 평택시 · 오산시 및 안성시
강원지청	033-269-3551	강원 춘천시 · 홍천군 · 인제군 · 화천군 · 양구군 및 경기도 가평군
강릉지청	033-539-1902	강원 강릉시 · 속초시 · 동해시 · 양양군 및 고성군
원주지청	033-769-0800	강원 원주시 및 횡성군
태백지청	033-552-0009	강원 태백시 및 삼척시
영월출장소	033-374-0009	강원 영월군 · 정선군 및 평창군
부산지방고용노동청	051-853-0009	부산 중구 · 동구 · 서구 · 사하구 · 영도구 · 남구 · 부산진구 및 연제구
부산동부지청	051-559-6688	부산 동래구·해운대구·금정구·수영구 및 기장군

노동관계법 준수 자가진단표

(일반기업용)







명칭	대표번호	관할구역
부산북부지청	051-309-1500	부산 북구 · 사상구 및 강서구
창원지청	055-239-6500	경남 창원시 · 창녕군 · 함안군 및 의령군
울산지청	052-272-0009	울산
양산지청	055-387-0009	경남 김해시 · 밀양시 및 양산시
진주지청	055-752-0009	경남 진주시 · 사천시 · 합천군 · 거창군 · 산청군 · 하동군 · 함양군 및 남해군
통영지청	055-650-1951	경남 통영시 · 거제시 및 고성군
대구지방고용노동청	053-667-6200	대구 중구 · 동구 · 수성구 · 북구, 경상북도 영천시 · 경산시 · 청도군 및 군위군
대구서부지청	053-605-9000	대구 서구 · 달서구 · 남구 · 달성군, 경북 칠곡군(석적읍 중리 구미국가산업 단지는 제외) · 고령군 및 성주군
포항지청	054-271-6700	경북 포항시 · 경주시 · 영덕군 · 울릉군 및 울진군
구미지청	054-450-3500	경북 구미시 · 김천시 및 칠 곡 군 석적읍 중리 구미국가산업단지
영주지청	054-639-1111	경북 영주시 · 상주시 · 문경시 및 봉화군
안동지청	054-851-8000	경북 안동시 · 예천군 · 의성군 · 영양군 및 청송군
광주지방고용노동청	062-975-6200	광주광역시, 전남 나주시·화순군·곡성군·구례군·담양군·장성군·영광군 및 함평군, 제주특별자치도
전주지청	063-240-3400	전북 전주시 · 남원시 · 정읍시 · 장수군 · 임실군 · 순창군 · 완주군 · 진안군 및 무주군
익산지청	063-839-0008	전북 익산시 및 김제시
군산지청	063-452-0009	전북 군산시 · 부안군 및 고창군
목포지청	061-280-0100	전남 목포시 · 무안군 · 영암군 · 강진군 · 완도군 · 해남군 · 장흥군 · 진도군 및 신안군
여수지청	061-650-0108	전남 여수시 · 순천시 · 광양시 · 고흥군 및 보성군
대전지방고용노동청	042-480-6290	대전, 세종특별자치시, 충청남도 공주시 · 논산시 · 계룡시 및 금산군
청주지청	043-299-1114	충북 청주시 · 진천군 · 괴산군 · 보은군 · 옥천군 · 영동군 및 증평군
천안지청	041-560-2800	충남 천안시·아산시·당진시 및 예산군
충주지청	043-840-4000	충북 충주시 · 제천시 · 음성군 및 단양군
보령지청	041-931-6640	충남 보령시 · 서천군 · 청양군 · 홍성군 및 부여군
서산출장소	041-661-5630	충남 서산시 및 태안군

노동관계법 준수 자가진단표

(일반기업용)

